

「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원섭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,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신고자 · 협조자 비밀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4조 및 제13조의3
- 「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2
-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○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임.

○ 검토 결과,
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,
-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,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을 위하여 갑질피해 신고의 처리 및 징계, 예방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함.